

# 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46,505,058	13,395,152
일반회계	417,541,857	12,526,256
특별회계	28,963,201	868,896
기타특별회계	28,963,201	868,896
상수도특별회계	16,949,327	508,480
자활기금특별회계	920,517	27,61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40,371	25,211
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	4,301,059	129,032
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	294,017	8,821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5,657,910	169,73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,438,97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- (2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
- (3) 재해대책 및 복구비
- (4)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

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년도 중 내시된 교부세, 보조금,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